

# 조합원 경조금 지급규정

- ◇ 2003. 01. 03 제정
- ◇ 2015. 01. 19 개정
- ◇ 2020. 06. 04 개정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 조합원 경조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 지급대상, 지급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조합원 및 후원회원으로 한다. 단, 단체협약 제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 【지급기준】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

구분	내 용	금 액	비 고
조의금	본인 및 배우자 사망	1,000,00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200,000	
축의금	본인 및 자녀 결혼	100,000	
	자녀 출산	100,000	
전별금	정년퇴직	1,000,000	퇴직전 3년 조합원 유지시

제4조 【지급】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2. 경조금 동일 지급사유가 2인 이상시 각각에 대해 지급한다.

제5조 【청구절차 및 기간】

1. 경조금 지급 청구는 본인이 별지서식에 의한 경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2. 경조금 지급 청구는 사내통신망 알림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경조금의 청구시효는 지급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 【경조금 지급제한】 조합징계(정권, 제명)중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무취급】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무는 노동조합의 사무취급에 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집행된 경조사비 지출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